##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39 발의연월일: 2020. 10. 7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윤미향 • 이수진(비)

양이원영•노웅래•임종성

안호영 · 장철민 · 송옥주

이용빈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5급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음.

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(ILO)는 군인, 경찰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왔음.

이에 국제노동기구(ILO)의 핵심협약인 「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」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,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, 퇴직공무원,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6조 및 제7조).

##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무원의"를 "사람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"을 "외무영사직렬"로, "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"을 "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,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" 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다른 공무원에"를 "업 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의 중요한 근무조건에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인사·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 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"을 "업무의 주된 내용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"으로 하고. 같은 항 제3호 중 "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"을 "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#### 1. 일반직공무원

- 3. 별정직공무원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

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가입 범위) ① 노동조합에	제6조(가입 범위) ①
가입할 수 있는 <u>공무원의</u> 범위	사람의
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<u>.</u>
1.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	1. 일반직공무원
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	
2.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	2 <u>외무영사직</u>
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	<u>렬·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</u>
<u>무행정</u> ·외교정보관리직 공무	무원,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
<u>원</u>	<u>원</u>
<u>&lt;신 설&gt;</u>	3. 별정직공무원
4.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	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
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	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
	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
	으로 정하는 사람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	②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	
수 없다.	
1. <u>다른 공무원에</u> 대하여 지휘	1.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
·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	무원의 중요한 근무조건에
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	
무에 종사하는 공무원	

- 2. 인사·보수에 관한 업무를 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워
- 3. 교정·수사 또는 그 밖에 이 3. -----등 공공의 안녕과 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
- 4.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 계의 조정 · 감독 등 노동조합 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 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
- ③ 공무원이 면직 파면 또는 | <삭 제> 해임되어 「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」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 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「노동위원회법」 제2조에 따 른 중앙노동위원회(이하 "중앙 노동위원회"라 한다)의 재심판 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 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.

2. 업무의 주된 내용이 조합원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 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업무에 종사하는-----

국가안전보장에 관한-----

<삭 제>

<u>④</u> (생 략) 제7조(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) 제7조(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<삭 제>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[이하 "전임자"(專任者)라 한다]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에 따 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 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 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(생략)

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 ① (현행과 같음)

<u><</u>삭 제>

② (현행 제4항과 같음)